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외장
람	

제1397호 2018. 10. 19(금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8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488호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----- 15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8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10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정비, 위탁기간 명시, 민간위탁동의안 및 사무위탁신청서의 서식 신설하는 등 조례 정비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정비
- 민간위탁 계획 수립 조항 신설
-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신설
- 위탁기간 명시 조항 신설
- 재위탁시 구의회 통보 조항 신설
- 민간위탁동의안 및 사무위탁신청서 서식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560-4042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정비, 위탁기간 명시, 민간위탁동의안 및 사무위탁신청서의 서식 신설하는 등 조례 정비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2. 주요내용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정비
- 민간위탁 계획 수립 조항 신설
-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신설
- 위탁기간 명시 조항 신설
- 재위탁시 구의회 통보 조항 신설
- 민간위탁동의안 및 사무위탁신청서 서식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해당 없음”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 제목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”을 “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제2항 중 “민간위탁을”을 “민간위탁을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때”를 “때에”로, “구 의회의”를 “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동의안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탁 사무”를 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·시달하고, 위탁사무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민간위탁 계획 수립)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령
2. 민간위탁의 목적
3.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
4. 민간위탁 추진일정
5. 민간위탁 소요예산
6.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
7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”를 “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

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심의위원회)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 의원,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와 현장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사함에 있어서”를 “행사할 때에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“(협약체결등)”을 “(협약체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반했”을 “위반하였”으로, “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”를 “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,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 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, 구의회에 즉 각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구청장은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처분이”를 “조치가”로, “처분이 있는”을 “그 조치가 있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민간위탁</u>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의 사무 중 일부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“<u>수탁기관</u>”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“<u>재위탁</u>”이란 <u>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
제4조(<u>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</u>)	제4조(<u>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</u>)

등) ①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단순화·표준화되어 있거나, 전문성·능률성이 요구되어 위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사회복지, 보건, 청소년, 문화, 체육, 녹지, 공원, 교통, 통계조사 등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사무
3. 교육, 연구,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국민의 권리,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처리함이 타당한 사무

②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

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(현행과 같음)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-----

----- 민간위탁을 하여야
--.

③-----
----- 때에-----

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인천광역시장 위임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수탁기

-----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동의안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--.

④-----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·시달하고, 위탁사무 --.

제4조의2(민간위탁 계획 수립)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무의 명칭 및 근거 법령
2. 민간위탁의 목적
3.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
4. 민간위탁 추진일정
5. 민간위탁 소요예산
6.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
7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-----

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.

③ 심의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---- 때에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근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 설>

제7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

① (생 략)

제5조의2(심의위원회) ①수탁기관
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
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
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
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
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
위원은 구의회 의원, 관계 공
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
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
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
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의
와 현장 확인 및 필요한 경우
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
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
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⑤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
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
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
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
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
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
로 한다.

제8조(협약체결등) ① (생략)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
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
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
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
포함되어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지휘·감독) ①·② (생략)

③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

②----- 행사
할 때에-----
-----.

제8조(협약체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위반하였-----
----- 사항을 반드시
포함하여야 ---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
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
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
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
여 재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 만
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
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여부를
결정하고, 구의회에 즉각 통보
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휘·감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구청장은 제1항-----

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사무편람) ① (생략)
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(이의신청) ①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--.

제10조(사무편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받아야 --.

제11조(이의신청) ①-----

----- 조치가 -----
----- 그 조치가
있는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488호

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운영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018. 10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및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회명 및 조례명을 변경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위원이 적정하게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, 위원회명을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로 변경함
- 위원수를 현 조례 20명 이내에서,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함
- 위원의 임기를 두 번만 연임가능에서 연임가능으로 변경함
-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, 반기별 1회 개최로 변경함
- 분과위원회 규정 추가

○ 제3장 정책기획단 규정 전체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기획예산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화 560-4044, 팩스 560-2703)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의 전문성 향상 및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회명 및 조례명을 변경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여 남성과 여성위원이 적정하게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, 위원회명을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로 변경함
- 나. 위원수를 현 조례 20명 이내에서, 40명 이내로 확대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함
- 다. 위원의 임기를 두 번만 연임가능에서 연임가능으로 변경함
- 라.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, 반기별 1회 개최로 변경함
- 마. 분과위원회 규정 추가
- 라. 제3장 정책기획단 규정 전체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중·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·제안하며,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·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2.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서구 미래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
3. 구정 주요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
4.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
제3조(위촉 및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
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은 환경, 안전, 문화, 교육, 복지, 도시개발, 교통, 경제 등 분야
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제4조(임기 등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보궐 위촉
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
해제 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
2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
단될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제5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간사는 기획예산실장,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
좌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
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안건배부)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8조(자료협조 및 의견청취)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, 구민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분과위원회)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